

택시 및 리무진 법원 규칙 변경사항 요약

2014년 1월 15일부로, OATH 택시 및 리무진 법원(이하 "법원")에서의 절차에 대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. 주요 변경사항이 아래에 요약됩니다. 새로운 규정은 뉴욕시 규정(이하 "RCNY") 제 48 조 제 5 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이는 <http://www.nyc.gov/oath>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대리인

법원에서 귀하를 대리할 대리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.

- 귀하를 대신하여 출석하도록 귀하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증빙을 제출한 사람은 누구나 귀하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더 이상 공인 업계 대리인이거나 변호사가 아니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.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은 *대리인 승인서(Authorized Representative Form)*를 위임의 증빙으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법원에서 일 년 내에 5명 이상의 피항소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의 경우, 반드시 *대리인 등록 양식(Representative Registration Form)*을 이용하여 법원에 등록해야 합니다. (가족 구성원이 피항소인을 대리하는 경우 및 뉴욕주에서 법률 행위를 하도록 허가된 변호사의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.)

모든 피항소인은 대리인을 통해 출석할 수 있습니다.

- 귀하가 피허가자라도 심리에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. *대리인 승인서(Authorized Representative Form)* 등을 통해 대리인에게 적절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, 귀하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출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.
- 물론 귀하는 직접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. 법원에서 귀하를 대리하도록 변호사나 대리인을 위임할 필요는 없습니다.

심리에 불참한 경우

불참한 경우 간단하게 새로운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- 심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결석 결정이 내려진 경우, 소환장 상의 공소 사실에 대한 답변 진술 없이 해당 결정에 대해 무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6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해 무효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, 심리 불참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만 제시하면 됩니다. 60일 이후 및 2년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해 무효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리 불참 및 신청이 지연된 합리적인 사유만 제시하면 됩니다.

이례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결석 결정 무효 신청은 한 번만 허가됩니다.

- 귀하의 결석 결정 무효 신청이 허가되었으나 새로 예정된 심리에도 출석하지 못한 경우, 두 번째 결석 결정에 대한 무효 신청은 예외적인 상황 및 부당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.

무효 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.

- 결석 결정 무효 신청이 거부된 경우, 해당 거부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.

모든 피항소인에게 제공되는 언어 지원 서비스

법원에서는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피항소인에게 무료로 전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원하는 경우, 직접 통역사를 대동하여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.